

제 호

(장애아 전문, 장애아 통합) 어린이집 지정서

지정 분야: () 어린이집

어린이집의 명칭:

소재지:

정원: 명

대표자 성명: (생년월일:)

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32조제2항 및 「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위 시설을 () 어린이집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
시장·군수·구청장

직인